

부속서 I
제12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유보

대한민국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현행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법률 제 7281호, 2004. 12. 3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대통령령 제 18736호, 2005. 3. 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산업자원 부령 제269호, 2005. 4. 8)
유보내용	외국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산업자원부 시행령에 따라 사전에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및 외국인투자 비율 등 사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안전·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민의 보건위생·환경보전 및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외국인직접투자”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매입하는 것 (2)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만기 5년 이상의 대부가 당해 지주회사의 자본투자와 관계에서, 당해 해외 지주회사 또는 회사에 의하여 투자되는 외국 자본 회사로 확장되는 것
유보목적 또는 동기	통계상 목적 및 인센티브 검토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유지

대한민국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현행법령	적용 불가능
유보내용	전기, 가스와 같은 산업에서 기존의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소유하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이나 처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그러한 지분이나 자산의 소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설립된 기업이나 투자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 유보의 목적상, (1)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유지되거나 채택된 것으로, 이전 또는 처분시점에 지분이나 자산의 소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여기에 규정된 국적요건을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발효 중인 조치로 간주된다. 그리고 (2) “공기업”은 소유지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기업을 의미하며,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오로지 기존의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이나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을 위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기업도 포함된다.
유보목적 또는 동기	국가안보 및 공익

대한민국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현행법령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5조, 제6조(법률 제7297호, 2004. 12. 31)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할 권리를 보유한다. 현행조치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외국법인·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는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시 벌칙이 부과된다. (2) 국방, 문화재보호, 그리고 생태계/자연보호 등의 목적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토지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처벌 가능하다. (3) 상속·경매 또는 계약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4)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법인 또는 단체가 국적을 바꾼 채 토지의 소유권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국적 변경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유보목적 또는 동기	제한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외국인의 국내 토지취득 현황 파악

대한민국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비거주자의 자본거래
현행법령	외국환거래법(법률 제6316호, 2000. 12. 29)
유보내용	비거주자는 다음의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한도(원화차입의 경우 10억원, 원화증권차입의 경우 50억원)를 초과하여 거주자로부터 원화를 차입하거나 원화표시증권을 차입하는 경우 (2) 단기 원화표시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재정적으로 불건전한 국내 기업에 단기외화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국내 개인 또는 비영리기관이 다른 거주자의 담보에 기초하여 재무신용을 제공하는 경우, 거주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거주자로부터 외화 표시 자금을 차입하거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을 경우, 한국은행총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거주자가 파생상품을 통하여 외국환거래법에서 허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특정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보목적 또는 동기	국가 안보 및 금융 안정

대한민국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현행법령	적용 불가능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매입과 같은 활동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유보목적 또는 동기	공익, 문화 다양성 및 정체성 보호 및 국가 안전 보장

대한민국

분야	농림축산업 및 관련 제조업
하위분야	
현행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7281호, 2004. 12. 3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 18736호, 2005. 3. 8) 축산법 제27조(법률 제6821호, 2002.12.2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3조, 제47조(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양곡관리법(법률 제7433호, 2005. 3. 31) 산림법 제5조, 제90조(법률 제7167호, 2004. 2. 9) 산지관리법 제25조, 제32조(법률 제7335호, 2005. 1. 14)
유보내용	대한민국 국민과 법인만이 대한민국에서 벼·보리 재배업과 육우사육업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그와 같은 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는 관련 법에 정한 한도를 따라야 한다. 이에 더하여, 대한민국은 농림축산업 및 그의 관련 제조업(금속·기계류는 제외)에 대하여 식량안보·국민보건위생·환경 및 자원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유보목적 또는 동기	식량안보·보건위생·환경 및 자원보전 정책

대한민국

분야	항공운송서비스
하위분야	CPC 731, 732 항공운송서비스 ※ 글라이더토잉, 낙하산 낙(투)하, 항공건설, 별목 및 건축 목적의 헬리콥터 활용(헬리콥터를 이용한 별목), 항공 관광(유람) 등 포함 CPC 734 운영자를 포함한 항공기 대여 서비스
현행법령	항공법 제3조, 제6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32조(법률 제7428호, 2005. 3. 31) 항공법 시행규칙 제278조, 제278조의2, 제298조, 제299조(건설교통부령 제430호, 2005. 3. 11)
유보내용	항공법 제6조의 세부규정에 규정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운송 또는 국제운송의 정기항공운송서비스 및 부정기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상기 (1) ~ (3)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5) 외국인이 대표이거나 외국인이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 또한,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등록은 상기 (1) ~ (5)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유보목적 또는 동기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서 자유무역협정 제3장(서비스무역)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분야

대한민국

분야	항공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항공기 사용사업 CPC 734* 운영자를 포함한 항공기 대여 서비스 * 항공화재진압, 산림화재관리, 항공광고, 비행훈련, 항공 지도 제작, 항공조사, 항공분사, 항공사진 기타 항공농업, 항공검사 및 감시 등 포함
현행법령	항공법 제3조, 제6조, 제134조(법률 제7428호, 2005. 3. 31) 항공법 시행규칙 제298조, 제299조의2(건설교통부령 제430호, 2005. 3. 11)
유보내용	항공기사용사업(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외의 업무를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항공기의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상기 (1) ~ (3)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5)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
유보목적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서 자유무역협정 제3장(서비스무역)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분야

대한민국

분야	방위 산업
하위분야	
현행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법률 제7281호, 2004. 12. 31)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방위 산업에서의 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할 권리를 보유한다. 방위산업체(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기업)의 신주 이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보목적 또는 동기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무기체계를 개발·생산하는 특수한 분야 특히 대한민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안보 위협이 가장 높은 나라이므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투자를 유보

대한민국

분야	전력 산업
하위분야	원자력을 제외한 발전 전력 송전, 배전 및 판매
현행법령	증권거래법 제203조(법률 제7428호, 2005. 3. 31)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7조의2(대통령령 제18757호, 2005. 3. 2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제5조(법률 제7281호, 2004. 12. 3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 18736호, 2005. 3. 8)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제5조(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4-51호, 2004. 5. 11)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를 포함하여 전력 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외국투자자는 한국전력 주식의 40% 이상을 소유할 수 없고,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송전, 배전 및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는 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된다. 최대주주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유보목적 또는 동기	전력 산업 민영화 계획과의 일관성 유지 및 전력 산업의 공익성 확보 차원

대한민국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
현행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법률 제6679호, 2002. 3. 30)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법률 제7527호, 2005. 5. 31)
유보내용	외국인은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에 투자할 수 없다.
유보목적 또는 동기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은 국가 산업정책의 이행을 위한 금융기관

대한민국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신금융서비스 등을 이용한 금융상품 또는 자본거래
현행법령	적용 불가능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신금융서비스 등을 이용한 금융상품 또는 자본거래에 필요한 조치를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유보목적 또는 동기	금융제도의 안정

대한민국

분야	총포·도검·화약류
하위분야	
현행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41조, 제42조, 제47조 등(법률 제7428호, 2005. 3. 31)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분야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사용, 판매, 저장, 운반, 수입, 수출 및 소지는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규제된다.
유보목적 또는 동기	국가안보 보호 및 사회질서 유지

대한민국

분야	수산 관련 산업
하위분야	
현행법령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법률 제5809호, 1999. 2. 5) 수산업법 제5조(법률 제7477호, 2005. 3. 31)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관할수역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수산 관련 활동을 통제할 권리를 보유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수산 관련 산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투자할 경우 지방정부 광역시장, 도지사,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유보목적 또는 동기	대한민국 수산업의 경쟁력 미약으로 최소한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산업에 대한 국내적 제한이 필요

대한민국

분야	가스 산업
하위분야	
현행법령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법률 제 6836호, 2002. 12. 30) 한국가스공사정관 제11조(주식소유의 제한 등)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가스 산업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도입, 도매, 전국 주배관망의 운영 등에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의 한국가스공사 주식 취득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다.
유보목적 또는 동기	국가적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

대한민국

분야	원자력 산업
하위분야	원자력 발전 핵연료의 생산과 공급 방사성 폐기물 처리, 처분
현행법령	전기사업법 제12조(법률 제7508호, 2005. 5. 2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7281호, 2004. 12. 3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 18736호, 2005. 3. 8)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제5조(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4-51호, 2004. 5. 11) 원자력법 제11조, 제21조, 제33조, 제34조, 제43조, 제57조, 제64조, 제76조, 제86조, 제90조의4(법률 제7428호, 2005. 3. 31)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원자력 산업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외국투자자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원자력연료의 제조와 공급, 원자력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사업,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같은 원자력발전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외국인은 원자력발전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
유보목적 또는 동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원자력 산업의 특수성